

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01.01]
(일부개정) 2026.01.01 조례 제1607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일자리경제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51-709-4392

제5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1. 1.>

1.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
2.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
3.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
4. 창업 상담, 교육 및 판로 지원
5. 취업,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미취업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,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,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6. 1. 1.>